

공정한 경쟁률을 감시하는 '공적 파수꾼'

'경제 검찰',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파수꾼'을 자처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오는 4월 1일로 15주년을 맞는다. 15년이란 연륜은 사람의 성장 과정으로 친다면 소년기를 겨우 지나 청년기로 막 접어드는 시점. 자유롭되 그러나 공정한 경쟁 질서가 보장되는 이른 바 성숙되고 선진화된 공정거래 제도가 단숨에 뿐리 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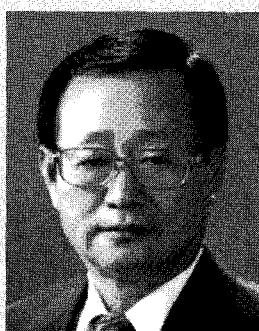
지난 81년, 현행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공정거래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 배경에는 소수 재벌에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과 이에 따른 시장의 독과점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소득 분배나 형평의 왜곡 등 갖가지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고조된 경계심리가 깔려 있었다.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이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성장 결과로 빚어진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화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 신규 진입 장벽을 풀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독점규제법은 대기업 위주의 정부 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가 노출시킨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폐해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다. 폐해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정부였다는 점이 미국과는 처음부터 달랐다.

대기업 편향의 지원과 특혜로 상징되는 성장 우선 논리의 잔재가 여전히 뿐리깊고, 이미 거대한 장벽으로 자리잡아버린 '독과점 세력'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시키는 과제가 일천한 역사를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일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운용·집행을 맡은 주무당국으로서 대기업의 독과점 횡포 규제, 경제력 집중억제와 함께 각종 불공정 거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조사·제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공정한 경쟁의 를을 지키도록

청년기 맞아 믿음직한 모습 기대



김서웅

서울경제신문 편집이사

감시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유일한 공적 파수꾼이다. 자율과 개방시대의 '경제 검찰'로서의 역할에 거는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시대적 소명에 얼마나 충실했고, 얼마나 당당하게 대처해왔는가? 대답은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크다는 여론이 많다. 벽찬 상대보다는 사소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규제에 치중한 면도 있으며 대기업의 과장 광고 문안이나 고쳐 주는 정부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어 왔다. 독과점이나 경제력 집중을 막는 핵심 소임에는 무기력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편파적 판정이나 특정기업과의 유착 의혹을 낳는 일조차 없지 않았다.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의 70~80%가 담합, 부당 내부거래 등 대기업 비리를 건드린 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호의적이라고 '물지 않는 개'라고까지 혹평했다지만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논평한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을까? 결과는 정부의 정책 표방과는 달리 재벌의 소유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문어발식 영토 확장도 끝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재벌의 내부지분율, 즉 오너 지배 하에 있는 주식 지분 비율이 작년 4월 현재 43.3%로 94년보다 오히려 0.6%가 높아졌다. 특히 동일인 지분율은 93년 4.1%, 94년 4.2%, 그리고 작년엔 4.9%로 계속 높아졌다. 내부지분율이 20% 이하로 소유분산 우량기준을 충족한 재벌은 한 군데도 없었고, 총주식의 50% 이상을 몇몇 사람끼리 독점하고 있는 재벌이 6군데나 되었다. 소유의 집중, 특히 오너 일인의 집중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무한경쟁 시대의 극복은 경쟁력 강화뿐

문어발 확장도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더욱 기승하고 있다. 30대 재벌의 계열사수가 92년 6백8

개에서 93년엔 6백4개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94년엔 6백16개, 95년엔 6백23개로 늘었다. 재벌당 계열사수가 평균 20.8개에 이르고, 5대 재벌의 경우는 41.8개씩 느리고 있는 셈이다. 그것도 문어발 확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던 현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재벌의 문어발이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무분별한 대기업의 영토 확장이 가져오는 중소기업 와해와 독점적 시장 지배, 그리고 소중한 국가자원 배분의 비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자른다면 30개 재벌의 문어발이 7개나 오히려 늘어난 바로 지난 94년중에 1만1천2백개의 중소기업이 부도를 내고 쓰러졌다는 사실을 단지 '양극화'란 단어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경제력집중 억제란 과제가 공정거래위원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정권 차원의 의지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예 벽찬 상대나 힘겨운 과제를 회피하거나 핵심적인 소임에는 아예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었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뢰 훼손은 시장경제 질서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고, 경제운영 질서의 본질에 대한 회의를 낳게 된다.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는 시장경제 질서의 파수꾼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어깨에 더 한층 무거운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는 산업 정착을 비롯, 경제의 기본 질서를 보호와 규제에서 개방과 경쟁촉진형으로 시급히 전환해 나간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전개되는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생존 전략은 경쟁력 강화뿐이다. 정부 주도의 성장 우선 논리가 남긴 보호와 규제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는, 또 이같은 보호와 규제의 틀 속에서 자란 취약한 기업 체질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을 이겨나갈 수 없다.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갖가지 경쟁제한적인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제거해 나가되 경쟁의 틀만은 더욱 공정하고 엄격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경쟁라운드(CR)도 당장 우리 발 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 역시 국경을 초월해서 공정경쟁의 틀

을 짜자는 것이고 미국, 유럽연합이 이미 우리에게 강력한 의지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과세장벽이나 시장개방 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국 상품이나 기업 진출에 발목을 잡는 제도나 관행도 문제를 삼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경쟁라운드의 쌍무협상에 대응,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위협하고 자국 소비자뿐 아니라 수출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업체의 경쟁 제한적 거래관행에 대해서도 자국의 독점 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경쟁법의 역외적 용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구조, 즉 계열과 비계열사를 차별하는 부당내부거래나 제조업과 유통업이 수직결합된 전속대리점계약 등 배타적 경영행태도 공정라운드의 과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과 창의가 꽂힐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 운용의 두 기본축이 바로 규제완화와 공정경쟁이다. 행정규제가 철폐되고 경쟁이 촉진되면 될 수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은 병행해서 막중하고 막강해 진다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추세가 될 것이다.

규제를 풀어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한껏 꽂힐 수 있도록 하되 시장경쟁의 게임룰만은 더욱 엄격하고 확실하게 만들어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레프리로서의 정부 역할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천한 연륜을 구실로 계속 걸음마 연습이나 하고 있을 만큼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정부내의 위상도 이미 크게 달라졌다. 지난 94년 12월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구경제기획원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된 중앙 행정기관으로 변신한데 이어 다시 금년부터는 차관급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조직도 보강되고 있다. 네차례의 법률 개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나름대로 공정거래 제도를 보완하는데도

노력해 왔다. 구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소속의 공정거래과란 1개 과조직으로 탄생했던 지난 76년 2월의 초라했던 정부내 공정거래기구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에 정식 멤버로 참여하게 된다. 주요정책 현안이나 법령심의 과정에서 위원장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상이 격상되고 조직이 보강된다고 해서 저절로 맡은 소임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벅찬 상대는 피하고 강자에는 허약해지는 모습으로는 경제력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불공정은 해소해나갈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단순한 게임룰의 심판자로서뿐 아니라 잘못된 게임룰을 경기 참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고쳐 나가야 하는 소임도 맡겨져 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거대 독과점 세력의 전향은 만만찮을 것이다. 아무리 소신있는 판정을 했다 해도 보복성 음해에 휘말릴 가능성 역시 없지 않다. 때로는 같은 정부 내에서도 재정경제원이나 통상산업부 등 막강 부처의 정책이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검찰’, ‘시장경제 질서의 파수꾼’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실천력 없이는 거센 저항과 역풍을 이겨나가기 어렵다. 스스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려는 단호한 결의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권위가 서는 정부기관 역시 될 수 없다. ‘물지 않는 개’ 보다도 ‘분별없이 물어뜯는 개’는 더 큰 경계의 대상이다.

얼마 전 어떤 재벌그룹 총수 발언이 고위층에 폐쇄죄를 샀다고 느닷없이 부당내부거래 조사 업포로 위협하고 나서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은 힘 실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치 사정의 하수인으로 전달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았다. 진짜 사유가 어디에 있었건 참외발에서 신발끈을 고쳐매는 잘못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시행 15년째로 청년기를 맞는 공정거래 제도가 올해를 계기로 보다 어른스럽고 믿음직한 새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해 본다. ■